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은 대학원학칙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등 록

제2조(등록) ①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등록기일 내에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학생은 매학기 대학원장이 정하는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석사학위과정 원생으로서 4개 학기내에 24학점을 이수하지 못하여 5학기에 학점을 이수할 경우, 박사학위과정 원생으로서 6개 학기(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 및 한의학과는 4학기) 내에 36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고 7학기(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 및 한의학과는 5학기)에 학점을 이수할 경우,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원생으로서 8개 학기(약학과는 6개 학기) 내에 54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고 9학기(약학과는 7학기)에 학점을 이수할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

2.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④대학원 각 과정별 수료자는 매 학기 등록기간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연구수료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구수료생 등록신청은 각 학위과정별 졸업연한까지로 한다.(신설 2015.09.22.)

제3조(등록금의 반환) ①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법령에 의한 경우, 본인의 사망,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2-2~2 제2편 학 칙

3. 개인적인 사유로 입학을 포기 또는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②전항 제3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등록금 납부 후 입학포기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③등록금의 반환액은 반환사유 발생일을 기준하여 학사일정표에 의한 총 수업일수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금은 기준에 따라 학기 개시일 전에는 전액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학기개시일 전 : 등록금 전액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6. 단, 정원 외 외국인 신입생이 관련 법령에 의거 입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 반환은 학기 개시일 전으로 간주하여 산정, 반환한다.
- ④장학금 및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은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 3 장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및 수강신청

제4조(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편성) 본 대학원의 교과목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과정별 교과목은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2. 교과목 편성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편성하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학원은 학제간 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타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을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4.11.18.)

제5조(교과목의 개설) 학과주임교수는 각 학과에서 편성된 교육과정(명칭변경 2015.08.28.) 중에서 그 학기에 설강할 과목을 정하여 개강 3개월 전에 대학원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선수과목) ① 유사전공 및 타전공 입학자는 12학점 이내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

② 선수과목은 학과 내규에 의해 지도교수가 선정하고, 주임교수의 확인하에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③ 선수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의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한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7조(강의 담당과목수) 대학원과정 강의는 석사·박사학위과정 각각에 대하여 한학기에 한과목만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 과정당 2과목을 담당하여야 할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강사제청) 각 학과 주임교수는 개강 3개월 전까지 강사제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의2(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의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은 박사학위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05.25.)

1. (삭제 2012.05.25.)
2. 교내·외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
3. 각종 학술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취득자
4. 기타 대학원장이 승인한 자(개정 2012.05.25.)

제9조(수강신청 및 변경) ① 원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은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지도에 따라 신청하고 그 신청서를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강신청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교 약학과 졸업생 중 석사통합과정을 이수하는 원생은 약학과 대학원과 학부 공통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 12학점까지로 하고, 선수과목은 수강신청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개강후 2주 이내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의학과 및 의과학과 원생이 연구학점을 신청하는 학기에 연구학점(3학점)을

2-2-2~4 제2편 학칙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⑥의학과 및 의과학과의 연구학점은 석사과정 3학점, 박사과정 6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구학점의 성적은 지도교수가 부여한다. 다만, 박사과정의 연구학점은 한 학기에 6학점을 모두 신청할 수 없고, 한 학기에 3학점씩 2개 학기에 나누어 신청해야 한다.

제10조(수업계획서) 각 교과목 담당 교강사는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학기 수강신청일 2주일 전에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생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 4 장 시험 및 학점

제11조(시험 및 성적) ①시험에 대한 성적평가는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학점의 인정은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한 과목에 한하되 평점 2.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학위과정 수료 사정에는 전체 이수과목의 성적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③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 - 100점	4.5
A ⁰	90 - 94점	4.0
B ⁺	85 - 89점	3.5
B ⁰	80 - 84점	3.0
C ⁺	75 - 79점	2.5
C ⁰	70 - 74점	2.0
F	69점 이하	

④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는 교과목은 'P'(급제) 또는 'F'(낙제)로 평가하며,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제11조의2(성적표 제출) ①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에 시행한 교과목 시험의 성적표를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표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교수는 소정의 기간에 해당시험지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성적 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점) ①학점은 주당 1시간씩 15주간 수업한 것을 1학점으로 하고 1과목을 3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습과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논문지도는 2차 학기부터 시작하되, 석사과정은 3학기, 박사과정은 5학기(의학과, 의과학과, 약학과, 한의학과는 3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7학기(약학과는 5학기)에 걸쳐 받아야 한다. 다만, 논문지도는 연구학점 이수로 대체한다. (개정 2017.12.20.)

③논문지도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만을 합격으로 한다.

④제3항에서 정한 논문지도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제13조(학점교류) ①학점 교환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대학원간 학점교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학위과정 간 교과목 연계) ①학과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학사과정학생으로서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 개설과목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에는포함 할 수 없으나 대학원 진학 후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포함한다.

②제1항의 ‘학과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이라 함은 학사학위과정을 3학년 이상 이수하고 전공과목 이수학점의 평균평점이 4.0이상인 자를 말한다.

③의학과외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공통, 전공 및 선택과목의 초과학점은 박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타교 석사과정 이수학점은 불인정). 다만, 연구학점은 이전되지 않는다.

④본교 약학과 졸업생 중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약학과 학부 과정과 대학원에 공통으로 개설된 교과목의 경우에는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⑤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은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학부 전공과목을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원 과정별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8.02.22.)

제 5 장 제적·퇴학 및 재입학

제15조(제적, 퇴학) ①재학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기간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4. 징계 및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되는 자

2-2-2~6 제2편 학 칙

②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재입학) ①제15조에 의거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징계에 의한 제적자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입학시에는 입학시험은 면제되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그 퇴학 또는 제적전에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 6 장 연구과정

제17조(연구과정) ①연구생의 입학자격은 학위과정에 준한다.

②연구교과목을 이수한 연구생에게는 연구교과목에 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연구생으로서 정규학위규정의 교과목 수강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제증명

제18조(제증명) ①원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증명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각종 증명서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는 대학에 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가천의과학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원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원생은 통합전 경원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11.18.)

이 세칙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8년 02월 22일부터 시행한다.